

엔터아지트 위탁 운영단체 모집공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엔터아지트 위탁운영단체·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I. 위탁개요

1. 사 업 명 : 엔터아지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2.
3. 위탁대상 시설 : 엔터아지트

시 설 명	시설 구분	위 치	규모(㎡)	운영보조금 (‘26년 기준)	비고
엔터아지트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아지트)	광운로3길 5, 3층 (월계1동)	118.8㎡	69,024천원	

※ 시설의 운영상황 및 노원구의 운영지침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운영보조금 외 사업수입 등 다각적 재원조달방법을 통해 예산을 충당·운영해야함

4.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5. 위탁업무 : 엔터아지트 관리·운영 전반
6.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II. 신청자격 등 신청사항

1. 신청자격 : 엔터아지트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청소년 단체]

- 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2. 신청제외대상

- 가. 최근 5년 내에 청소년기본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이사장 또는 법인회장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단체 및 법인으로 시설위탁시 공신력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라.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 및 법인(예산횡령,인권침해,성범죄,법인명의 대·차용,인권착취 등)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및 단체
- 마.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및 법인
- 바.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및 법인

3. 위탁조건

- ☐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 협약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제출(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증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성실 이행

< 협약서 내용 >

- ① 책정된 임금의 지급
-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액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가.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 추진이나 영리목적의 특정용도로 사용 불가
- 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구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다. 구에서 시설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의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상세한 위탁 조건은 위·수탁협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명시

4. 선정방법 및 발표

- 가.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의 당일 PT를 활용한 제안설명(15분이내), 질의응답(10분이내)후 심의
- 나.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

5. 신청서 및 제안서 등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12.(월)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나. 접수장소 :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나.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
- 다.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수탁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여부 확인)
- 라. 법인(단체) 운영계획서(소정양식) 1부(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등 증빙자료 및 타 시·도소재 부동산은 공시기준시가 등 증빙자료 첨부)
- 마. 2024년~2026년 법인(단체) 사업 실적, 예산서
- 바. 2027년~2029년 위탁시설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 사. 법인대표와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 아. 2024년~2026년간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감사 보고서 감독청평가결과 각 1부
- 자. 기타 수탁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7. 제출방식

- 제출서류(가~자.까지의 서류 및 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 10권 제출
 -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인식지 등으로 구분
 - ※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 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전자파일(PDF) 제출 : 접수기간 중 이메일(yoonh09@nowon.go.kr)로 제출
- 발표자료(PPT) 제출 : 10.15.(목)까지 이메일(yoonh09@nowon.go.kr)로 제출

Ⅲ. 수탁운영단체 선정

1.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0. 27.(화) 14:00

※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일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별첨2]심사기준(안) 참고

3. 수탁자 결정방법

- 모든 위원이 독립적으로 전체 평가항목을 심사한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동점인 경우 사업능력 분야, 공신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4. 심사결과 발표 :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지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

Ⅳ. 기타사항

1.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엔터아지트 위·수탁운영협약서」로 별도 규정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 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신청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운영대표(예정)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10~15분 이내 설명(PT 등 설명방법 자유)
4.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담당 윤혜정 ☎02-2116-0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심사기준(안)

항 목(3)	중 항 목(9)	평 가 항 목(21)	배점	비고
공신력 (25점)	① 도덕적·법적 건전성 (11)	법인형태와 목적의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	2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운영에 적합한 이사의 구성	2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	3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	
	② 아동·청소년관련 기여도 (5)	최근 3년간 신청법인의 아동·청소년관련 실적	5	
	③ 행정능력 (9)	법인의 사업수행 여건	3	
		법인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3	
		법인의 보고의무 준수	3	
재정능력 (10점)	① 재무구조의 적정성 (4)	법인의 재무구조의 적정한 기반	4	
	② 회계집행 적절성 (6)	법인의 회계집행의 적절한 수행	6	
사업능력 (50)	① 향후 운영계획 (50)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수탁시설 운영계획	12	
		계획상 프로그램의 청소년활동 적합성	7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반영 여부	6	
		인력 구성 및 관리	5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5	
		시설 운영의 적절성	5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계획의 적절성	5	
		지역사회협력 계획의 가능성	5	
법인의 운영의지 (15)	①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5)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5	
	② 관장(내정자)의 전문성 (5)	관장(내정자)의 전문자격	5	
	③ 관장(내정자)의 운영의지 (5)	관장(내정자)의 운영의지	5	